

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-9호

'병용금지' 및 '연령금지'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

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(適正)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 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,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지¹⁾ 및 연령금지²⁾ 의약품 추가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월 31일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'병용금지' 의약품 추가성분 : 붙임 1.
2. '연령금지' 의약품 추가성분 : 붙임 2.

1) 병용금지 의약품

;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

2) 연령금지 의약품

; 약물의 흡수, 분포, 대사,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(소아 등)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

[붙임 1] '병용금지' 의약품 추가성분

- '병용금지' 의약품 추가성분

연번	성분명 1	성분명 2	허가사항 (상호작용)	비고
1	Adefovir Dipivoxil	Tenofovir Disoproxil Fumarate	신장청소율을 감소시켜 양쪽 약물 모두 혈장농도 상승	
2	Atazanavir Sulfate	Irinotecan Hydrochloride	골수기능 억제, 설사 등 부작용 증가	

[붙임 2] '연령금기' 의약품 추가성분

연번	성분명	금기연령	비고
1	Timonacic	12세 미만	
2	Tigecycline	8세 이하	
3	Atazanavir Sulfate	3개월 미만	